##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54 발의연월일: 2021. 5. 25.

발 의 자:정희용·김석기·김영식

김용판・서병수・양정숙

이양수 · 이채익 · 정진석

최춘식 • 태영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의 요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이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농업인등이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 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제8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거나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 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 농지등) ①           |
|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                  |
|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                  |
|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                  |
|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                  |
|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                  |
|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 1                |
|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                  |
|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                  |
|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                  |
| 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                  |
| 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                  |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
|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        |                  |
| 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     |                  |
| 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                  |
|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                  |
|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                  |
|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       |                  |
|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                  |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

| <u>경우 또는 2017년 1월</u>    |
|--------------------------|
|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
| 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         |
| 런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에 이          |
| 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
|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           |
| 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
| 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          |
| 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
| 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           |
| 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2                        |
|                          |
|                          |
|                          |
|                          |
|                          |
|                          |
|                          |
| <u>경우 또</u>              |
| 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     |
| <u>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u> |

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 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 <u>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1</u>   | <u> 게</u>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u> </u>  |
|    |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다            | <u> </u>  |
|    | 할 수 있거나 밭농업에 이를           | 용.        |
|    | 되었음에도 종전의 「농업의            | <u>소</u>  |
|    | 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
|    |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             | 급         |
|    | 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문           |           |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 <u>=</u>  |
|    | <u>경우</u>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경우 또는 2017년 1월 1</u> 9 | 길         |
|    |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 의         |
|    |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중          | <u>ス</u>  |
|    | 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늗         |
|    |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            | 음         |
|    | 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여           | 케         |

|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농 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 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 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